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15. 7.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은 종래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모펀드 규율 체계의 변화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및 재무안정 PEF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2개로 규율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종래 일반사모펀드 및 헤지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PEF와 재무안정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통합됩니다.

2.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및 판매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현행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의 운용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등록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헤지펀드(사후 보고)를 제외하고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요구되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설립 후 14일 이내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한 펀드 내에 다양한 투자 편입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이 마련되었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복층의 SPC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고, 여유자금으로 증권에 투자하는 한도가 종래 5%에서 30%(순자산 기준)로 확대되었습니다.

- 한편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의 면제, 투자권유광고의 일부 허용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운용상품 직접 판매 허용 등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 규제 완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그 투자목적회사 등을 제외한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금융전업그룹”이라 함)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금융전업그룹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또는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계열회사로 편입한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해 졌으며, 투자 대상회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7년 이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로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도록(현행법상 5년)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전업그룹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중요사항 공시나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하였습니다.

4. 기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를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로 제한하였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금지됩니다(증권시장등과 같은 공개시장을 이용한 거래는 허용).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서태용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96 | E-Mail. tyseo@shinkim.com |
| ● 김영주 변호사 | TEL. 02 316 4004 | E-Mail. yjukim@shinkim.com |